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362
------	-----

제안연월일 : 2021. 5. 26.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특별위원회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
 -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 심사안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심사방법: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56조, 제12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9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